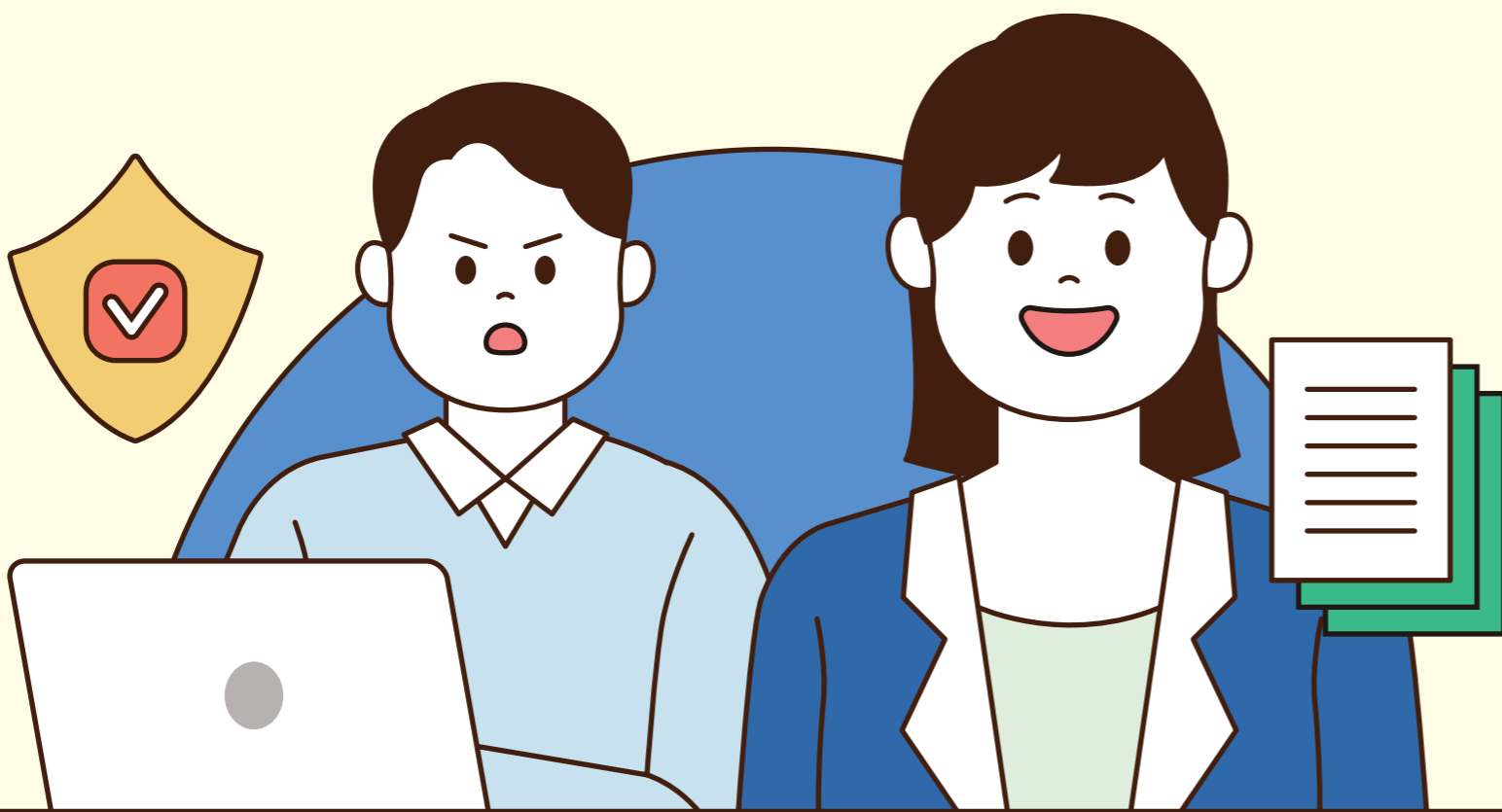




**개식용종식법에 따른**

**운영 신고 및  
이행계획서  
제출 안내**

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<b>제출대상</b> |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<br>- 개사육농장주, 개식용 도축·유통상인,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     |
| <b>기간</b>   | <b>신고</b> '24. 2. 6. ~ 5. 7.<br><b>이행계획서</b> '24. 2. 6. ~ 8. 5.        |
| <b>접수처</b>  |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·군·구청  |
| <b>제출내용</b> | <b>신고</b> 시설 명칭, 주소,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운영 현황<br><b>이행계획서</b> 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 |

**목적**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 지원  
 \*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·폐업 지원대상에 포함  
 \* 기간 내 미신고 혹은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개식용종식법 제14조, 제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

**근거법령**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(농식품부 고시 제2024-14호)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<https://www.mafra.go.kr> 및 지자체 담당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세요!